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70-1호 2003년 8월 27일(수)

제목1: ☑도축수수료현실화방안에 대한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주내에 조치하여 주기로하였다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류검토, 타당성여부, 3국(공정국, 경쟁국, 소비자보호국)의 협의 조율을 거치는 가운데 휴가철과 을지훈련관계로 지연되었다고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답변이 오는대로 바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목2: 내년부터 수의사도 중위로 임관될 예정

지난 7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회부되었다. 주요 내용중에 수의사도 다른 의무장교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중위이상으로 임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부터는 수의사도 다른 의무장교들과 마찬가지로 중위로 임관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매년 1월 하순경에 실시되던 수의사 국가시험이 앞으로는 매년 1월 15일을 전후해 치러지게 된다.

이는 육군본부가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수의과대학 졸업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의장교 양성교육을 의무사관(의무장교) 양성교육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기 위해 수의사 국가시험 조기시행을 농림부에 건의해 오며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1월 하순 수의사 국가시험을 실시해 2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 하던 것을 매년 1월 15일을 전후해 시험을 실시하고 매년 1월 30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발췌: 방역위생정보

제목3: 수입육 유통망 파괴로 수입육 가격 상승할수도

수입육 유통단계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되면서 수입육시장이 매우 혼란속에 빠지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01년 수입육 개방이전에는 외국 패커와 국내 대형수입업체, 도매상 소매상으로 이루어진 수입유통단계가 개방이후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육류 수입에 참여하면서 수직적으로 온 유통단계가 사실상 무너졌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채널과 공급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수입업체간의 가격덤핑 등 출혈경쟁으로 인해 하루사이에 수입업체가 탄생하고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유통업체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수입제품과 수입패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수입육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이 수입유통업체들이 육류시장 개방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수입육 유통업체가 과포화상태에 있는 줄 알면서도 한탕주의를 바라는 투기성 수입업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국내 수입유통업체들이 구매와 판매에 있어 출혈경쟁을 하자, 최근 수출패커들은 이를 활용해 수입육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은 현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들은 "수입유통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는 수입육 가격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췌: 축기중앙회-축산뉴스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70-2호 2003년 8월 27일(수)

제목4: 추석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농림부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9.11)이 다가옴에 따라 8월말부터 추석직전까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시,도 관련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에서 젓소고기,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하여 한우고기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한우, 젓소, 육우고기),부위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식육유통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거래기록의 의무제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시 처벌규정-

- 원산지를 허위 표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식육거래기록내역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지난해에는 총 27,700개업소를 점검하여 612건을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경고,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주요 위반내용 : 원산지 위반(226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301건),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위반 (72건), 기타 (13건)

- 아울러 농림부 관계자는 부정 또는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는데는 정부의 간섭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1,000여명의 축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과 일반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밀도살이나 한우둔갑판매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였을 때는 아래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2-500-1925~6)
- 수의과학검역원 부정축산물 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9060)
-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8112)
- 각 시,도 및 시,군,구 축산담당과 (국번없이 1588-4060)

-신고 및 검거시 포상금-

- 소,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 강제로 물을 먹인 소 도축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300만원을,
-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등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한 자는 건당 5~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발체: 농림부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